

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707,324,537	21,219,736
일반회계		635,225,219	19,056,757
특별회계		72,099,318	2,162,980
	공기업특별회계	25,495,658	764,870
	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	25,495,658	764,870
	기타특별회계	46,603,660	1,398,110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86,423	17,593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13,127	6,394
	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1,196,039	35,881
	수질개선특별회계	44,608,071	1,338,24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.

제 4 조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580,3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